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작업준비시간, 대기시간, 일·속직 근로시간 등이 근로시간인 지 여부

**A**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월의 요금적용전력을 감소전과 감소후로 구분하여 요금적용전력을 산정합니다.

1. 감소전 요금적용전력 : 계약전력 감소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 감소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
2. 감소후 요금적용전력 : 감소전 최대수요전력에 대한 예상 최대수요전력과 감소일 이후 최대수요전력중 큰 것
3. 예상최대수요전력 = 감소전 최대수요전력 X 감소후 계약전력/감소전 계약전력

●한국중합노무법인한솔사무(031-677-7532-3)

**Q** 근로시간의 원칙과 개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 1주 40시간(40시간제 미도입 사업장은 44시간)이 원칙이다. 또한 연소자(15세 이상 18세 이하)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40시간제 미도입 사업장은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 즉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 근로 시간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의 기산점과 종료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이 되는 것이다. 즉, 기산점은 근로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하에 두는 시점이며, 종료점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해방되는 시점이다.

전·기·상·식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Q** 【요금적용전력과 기본요금】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요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A**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그러나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의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Q** 【일부해지시 기본요금 계산방법】 고압으로 수전하고 있는 공중전선 전기가 남아 돌아 계약전력을 줄이고 싶습니다. 이 경우 기본요금 경감효과가 있습니까?

**A** 전한전에서는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중설 현장조사 업무를 폐지하여 전기사용편의를 도모하

는 대신 고객의 자발적인 계약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월간 450시간 초과 사용고객에 대한 추가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요금제도는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1일 15시간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요금단가의 100%를 추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별), 임시전력(을) 고객입니다.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전에 증설 신청을 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전기설비 사용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의·학·상·식

포천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강진욱**



노비러스에 의한 코감기나 기침 감기 등을 적절한 약물 복용 없이 무조건 아로마 치료를 이용해서 치료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필자는 아로마치료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로마치료를 보조적인 치료의 한 방법이며 기존의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만한 의학적인 실력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령 코막힘과 인후통을 주소로 오는 비염이나 인후염등의 치료에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외래에서 아로마치료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물의 투여 기간과 양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증상 경감을 보다 빠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포천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아로마치료를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21세기는 자연의 시대이며 환경의 시대입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 많은 아로마치료가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포천병원과 이비인후과 아로마 클리닉도 이에 일조 할 것입니다.

●포천병원(031-539-9114)

아로마 치료(2)

그렇다면 이비인후과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이용될까요? 아로마 오일은 그 추출한 원료에 따라 소염, 항염작용, 항박테리아, 항진균, 국소혈류의 증가, 거담 및 발한 작용, 평활근 이완 작용, 중추신경계의 안정 작용등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기령 이비인후과영역에서 많이 쓰이는 유칼립투스란 식물은 그 잎에서 씨네올과 알파피넨이라는 물질로 주요 구성되는 식물성 오일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성분은 항염 작용과 호흡기계 약리 작용을 가지고 있어 다른 오일과 혼합하여 인후염에서의 가글이나 증기흡입을 이용한 기침, 콧물 등의 상기도 감염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이용합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오일과 이것의

배합을 통해 만성적인 기침과 인후통, 입안의 작은 궤양성 병변의 치료, 고막전공시의 빠른 상피재생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법이 그렇듯이 향유치료도 만드는 아니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로마 치료에 이용되는 오일은 식물의 대사산물을 매우 진하게 농축한 것으로 그것 자체는 희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부작용과 피부에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령 감귤류에 속하는 시나몬 같은 향유는 별과 반응하여 광과민성을 일으키며 영구적인 색소침착을 남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로마 치료가 좋다고 질이 좋지 않은 오일을 이용해 흡입하거나 마사지하는 것은 자칫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보통 감기로 불리워지는 리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부채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의 강제이행방법】 甲은 부채자 乙의 재산관리인 丙과 乙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매매행위는 부채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에 그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약정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매수인 甲이 丙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법원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부채자재산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 민법 제25조에 의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채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채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8

조에 의하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①보존행위, ②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부채자의 재산관리인 丙이 부채자 乙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위에서 규정한 부채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丙은 그러한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甲이 丙을 상대로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원의 선임에 의한 부채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으로서의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

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판결) 또한 "부채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채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부채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후허가는 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적·감독적 입장에서 하는 비재판적 것으로서 그 허가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신청절차는 소의 제기 또는 그에 준하는 신청과는 달리 그 의사표시의 진술만 있으면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계속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그 허가신청이 소송행위로서 공법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더라도 부채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위 약정을 기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6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 19278 판결).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자녀가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알아낸 일에 대해 아이를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화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아이에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이라고 확신시키고, 이 상황을 확실히 대처해 줄 것이라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아동에게 솔직히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은폐시키거나 축소 또는 비밀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아이를 억압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아이에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

에게 당신이 함께 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이가 자연스럽게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 질문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솔직해 대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해도 당신이 아이를 이해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가 성폭력피해를 입을 경우 그것은 온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 다른 자녀에게도 소홀해 지기 쉬우므로 그들의 느낌과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와 지원이 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친구나 친척 또는 상담전문가와 당신의 감정을 나누어 심리적으로 지지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국민주택 규모의 신축아파트를 1999년 10월 30일 분양받아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으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현 시세가 1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A** 소득세법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갖추고 있는, 실거래양도가액이 6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신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의 중 양도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조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 주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줍니다.

귀하와 같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중 6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은 우선 비과세를 적용하고,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중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20%에 상당하는 농어특례세제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꽃배달 서비스**

☘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281-14  
부인타사거리에서  
송우리쪽  
130m  
우측대로변  
풍산그라비아역

☘ http://www.sunghaflower.co.kr

011-758-9088



www.wellbeingcha.com  
031-543-1883

www.wellbeingcha.com  
011-9750-1883

☘ **운남보이차** 전문  
천연무공해식품  
무량산다예종  
원산지 제품 도매  
"자향다호회" 회원우대  
연중무휴시음  
다도시연회

☘ http://www.wellbeingcha.com

011-9750-1883